

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16. 12. 13.>

법 무 부

수신자 강성준 귀하 (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2층 천주교인권위원회)
(경유)

제 목 정보 (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) 결정 통지서

(앞 쪽)

접수번호 7351230	접수일 2020. 12. 24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청구 내용	2020. 12. 4.자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발신 전언통신문 '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시달'에 언급된 '추후 발송 예정인 공문' ※참고: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공문의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붙임자료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	---

공개 내용	강성준님 안녕하십니까? 법무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 [결정내역 : 정보공개](A4 : 총 5매) ○ 2020.12.4.교정본부 사회복귀과 발신 전언통신문에 언급된 추후 발송 예정인 공문 청구 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이 미흡하였거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위 조민석(02-2110-3416)
-------	---

공개 일시	2021. 01. 07. 17	공개 장소	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개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·시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·출력물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자파일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제·인화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-------	---

수령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 방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전송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보통신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-------	---

유의 사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- 다. 청구인의 임의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 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**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**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**납부일**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**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**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